



내집,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!!

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
내가족,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!!

[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]

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·시기

※ 보도

-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

※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

-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
- 대지경계선 부터 1~1.5m 구간

※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~다음날 오전 11시까지

